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7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5.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19. 7. 19.)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자: 안전교통국장 이 철)

- 가. 관계법령 및 훈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정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 및 내용을 우리구 기본조례에 반영
- 나.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기본으로 정비하되,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보완·수정
- 다.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편성기준,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 추진 예정

3. 주요내용

- 가. 대책본부의 구성 조정(조례 제17조 제1항 수정) : (별표1)참조

현 행	변 경
본부장,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재난안전상황실, 실무반	- 현행에서 담당관 추가 -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장

나. 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내용 구체화(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수정)

- (1) 위원구성 및 직무대행 등 대책본부회의 구성 세부조항
- (2) 회의소집 및 담당자 배석 등 대책본부회의 운영 세부조항

다. ‘위기경보’ 및 ‘재난 예·경보’ 조항 신설(조례 제29조의2, 제29조의3)

- (1) 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요청’
- (2) 재난안전법 제38조의2 에 따른 ‘재난 예·경보 실시’ 관련 조항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19. 5. 24. ~ 2019.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관계법령 및 훈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정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¹⁾이 통보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 및 내용 등을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보완·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1) 행정안전부 (2017. 8. 2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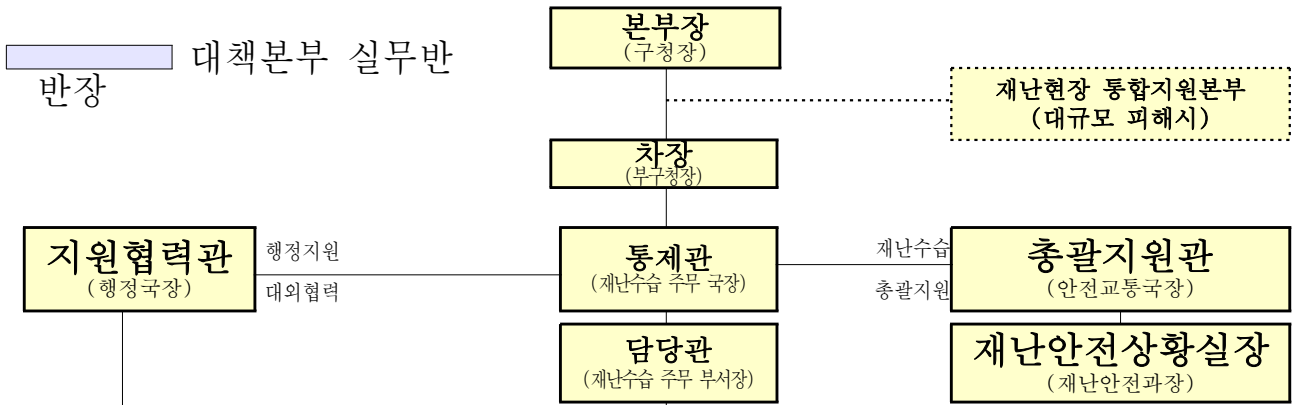
○ 안 제2조(정의)제8호 중 “대비 및 수습(대응 및 복구를 말한다)”을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로 하는 사항과, 제9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하는 사항은 각각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이나, 겨울철을 “11월 15일부터”로 하는 사유 설명은 필요해 보임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²⁾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관”으로 하는 사항도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이나 이는 제10호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앞부분에 ‘제10호 중’을 삽입(추가)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현황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중 제6호에 담당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을 신설하는 등은 표준안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강남구 재난안전대책 본부 조직도(※ 집행부 내부분서 재구성)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조직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정보 발령 복구지원

정책홍보실장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총무과장	재난수습 주무 부서장	복지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전산정보과장	공동주택과장	환경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남소방서
정책홍보실	재난안전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재난 유형별 주무부서 000 000 재난안전과장 (총괄지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전산정보과	공동주택지 원과 재건축사업 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 보건과 의약과	재난안전과
C&M 언론사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제2089부대	서울시지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강남구지원청 강남도시사업소		KT		한국전력 공사 전기안전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코원에너지 서비스	동부도로사 업소		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차병원 베스티안병원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강남소방서

○ 안 제17조2(대책본부 운영기간)의 신설은 현행 조례 제17조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과 본부장이 인정할 때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보다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3(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의 신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8조(대책본부회의) 및 안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는 현행 조례를 보다 구체화(대책본부회의 의장, 위원,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안 제18조제6항 중 “출석의원”은 “출석위원”으로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21조(상황판단회의)는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24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는 현행 “자연재난”을 “재난”⁴⁾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확대 사유의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제1호 및 제2호는 법⁵⁾에 따라 안전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정하는 사항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특정관리 대상 지역”으로 하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29조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안 제29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는 각각 법⁶⁾⁷⁾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

○ 이에 본 개정안은 대부분이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수정은 필요해 보임.

아울러,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의 반영 사항(반영 여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안 제18조6항을 신설했는데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나

○ 답 변: 수정하는게 맞음

○ 질 의: 안 제27조제2호 중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시설과 지역은 차이가 있어보이는데 변경 이유는

○ 답 변: 특정관리대상 전에는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로 바뀌면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함

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⑪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이재민 의원으로부터 일부 자구 및 문장표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57호

발의일자 : 2019. 07. 19.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지시문 중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개정지시문 중 누락된 부분 수정(안 제2조제9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안 제18조제6항, 안 제21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9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을 “기관을”로 한다.

안 제18조제6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2호 중 “부서의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u>대비 및 수습(대응 및 복구를 말한다)</u>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p>	<p>제2조(정의)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u>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u>- ----- ----- ----- ----- ----- ----- ----- ----- ----- ----- ----- -----</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 7. (개정안과 같음)</p> <p>8. (개정안과 같음)</p>

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9. (생략)

가. (생략)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전 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

9.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11월 15일-----

10. -----

----- 기관
을 -----.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현행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
- 11월 15일-----

10. -----

----- 기관
을 -----.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 3. (생략)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에 따른 -----

5.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소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생략)

<신 설>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사람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출석위원 -----
-----.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 및 총괄지원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7조의3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p>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u>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u></p> <p>1. 제25조에 따른 재난 안전상황실의 <u>장</u></p> <p>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u>과장</u></p> <p>3. 재난과 관련이 있는 <u>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u></p> <p>4. 그 밖에 <u>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u>관한 사항</u></p> <p>5. 그 밖에 <u>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③ ----- ----- <u>사람으로 구성</u> <u>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u></p> <p>1. 해당 재난 수습 주 <u>관 국·소장</u></p> <p>2. 해당 재난과 관련된 <u>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u></p> <p>3. 해당 재난 관련 <u>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 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u></p> <p>4. ----- <u>본부장 등</u>----- -----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u>부서의 장</u> ----- ---</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재난안전과

1. 제안이유

- 가. 관례법령 및 훈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정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 및 내용을 우리구 기본조례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기본으로 정비하되,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보완·수정
- 다.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편성기준,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 추진 예정

2. 주요내용

- 가. 대책본부의 구성 조정(조례 제17조 제1항 수정) : (별표1)참조

현행	변경
본부장,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재난안전상황실, 실무반	- 현행에서 담당관 추가 -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장

- 나.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내용 구체화(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수정)

(1) 위원구성 및 직무대행 등 대책본부회의 구성 세부조항

(2) 회의소집 및 담당자 배석 등 대책본부회의 운영 세부조항

다. '위기경보' 및 '재난 예·경보' 조항 신설(조례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1) 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요청'

(2) 재난안전법 제38조의2 에 따른 '재난 예·경보 실시' 관련 조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9. 5. 24. ~ 2019.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대비 및 수습(대응 및 복구를 말한다)”을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을 “기관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대책본부의 구성·운영)”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관, 총괄지원관, 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지원관, 통제관, 담당관,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구성하여,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제4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총괄지원관을 보좌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주무하는”을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 편성기준, 사무 전결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총괄지원관”을 “차장·통제관·총괄지원관·지원협력관·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연재난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를 “재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소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 제목 “(대책본부회의의 소집)”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최”를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7조의3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를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제21조제3항제4호 중 “본부장”을 “본부장 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연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통제관”을 “총괄지원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호 중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u>대비 및 수습(대응 및 복구를 말한다)</u>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p> <p>9.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u>대 응 및 복구(이하 “수습” 이 라 한다)</u>----- ----- ----- ----- ----- ----- ----- ----- ----- ----- -----.</p> <p>9. ----- -----</p>

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생략)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 차장, 지원협력관,

가. (현행과 같음)

나. ----- 11월 15일 -----

10. -----

----- 기관을 -----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
----- 총괄지

통제관, 총괄지원관, 재난안전 상황실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한다.

1. · 2. (생략)
3.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생략)
6.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재난 안전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통제한다.

<신 설>

7.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원관, 통제관, 담당관, 재난안전 상황실장 ---- 구성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총괄한다.
5. -----
----- 주관하는 ----

-----.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7.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재난 안전과장이 되며, 총괄지원관을 보좌한다.
8. -----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
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8. 그 밖에 재난유형별 재난수
습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총
괄지원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신 설>

-----.

<삭 제>

9. 그 밖에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
편성기준, 사무 전결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차장·
통제관·총괄지원관·지원협력
관·담당관 -----.

제17조의2(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

<신 설>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 3. (생략)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에 따른 -----

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신설>

④ (생략)

<신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신설>

5.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소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

① (생략)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장이 소집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삭제>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

<신 설>

제20조(대책본부실무회의) ① 본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 2. (생략)
- ② · ③ (생략)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대책본부실무회의) ① -----
----- 구성
· 운영---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 및 총괄지원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7조의3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① (생략)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사전 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③ (생략)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4. (생략)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총괄지원관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

-----.

1.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

3.·4. (현행과 같음)

제29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신 설>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29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2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